#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7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 백혜련 • 박선원 • 김재원

전진숙 • 이수진 • 정춘생

이워택 • 민병덕 • 김영진

신정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 란행위, 디지털 성폭력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등 전형적이지 않은 방식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입법의 미비라는지적이 있음.

이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 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물건을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3조의2(물건을 이용한 음란행
	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
	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
	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
	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
	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u>한다.</u>